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819
----------	---------

제안년월일 : 2022년 2월 14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수정이유

- ‘사진’이란 용어는 관련법률에서 정의되지 않아 조례상에 정의하는 것이 제한적 개념으로 보여 이를 삭제하고 그 외 사항들을 관련법률에 맞게 정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사진’은 관련법률에서 정의되지 않아 조례상에 정의하는 것이 제한적 개념으로 보여 이를 삭제하고, ‘사진상품’이란 용어는 단순한 상행위도 포함되므로 사진산업으로 관련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음(안 제2조).
- 사진산업 활성화 시책수립에 대한 규정은 이미 관련법령에서 명문화되어 있어 이를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였음(안 제3조).
- ‘사진산업 진흥과 지원계획’은 특정 분야까지 지원할 경우 형평성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하였음(안

제4조).

- ‘지역 사진산업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삭제하였음(안 제5조).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진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진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사진산업 활성화 및 사진문화 활동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사진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4조는 삭제한다.

안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1항제3호를 삭제하며, 기존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한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를 각각 안 제5조와 안 제6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사진”이란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창작물(종이 등 유형물에 나타내거나 디지털파일 형태로 디스크 등 디지털 매체에 담긴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u></p> <p>2. <u>“사진상품”이란 사진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 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u></p> <p>3. <u>“사진산업”이란 사진의 창작·전시·교육, 사진상품의 제작·개발·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진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진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u>사진산업 활성화 및 사진문화 활동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제3조(책무) ----- ----- ----- <u>사진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4조(사진산업 진흥 및 지원계획) ①</u> 시장은 <u>사진산업 진흥을 위하여 사진산업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 사진산업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u></p> <p>③ <u>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사진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p><u>제5조(사업) ①</u> 시장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u>제4조(사업) ①</u>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1.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p> <p>2. 사진산업 분야별 진흥사업</p> <p>3. 지역 사진산업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 지원</p> <p>4.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사진문화 활동 촉진 지원</p> <p>5. 그 밖에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u>제6조(지원)</u> (생략)</p> <p><u>제7조(표창)</u> (생략)</p>	<p>1.~2. <생략></p> <p><u><삭제></u></p> <p>3. (제정안 제4호와 같음)</p> <p>4. (제정안 제5호와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p><u>제5조(지원)</u> (제정안과 같음)</p> <p><u>제6조(표창)</u> (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사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진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진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진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
2. 사진산업 분야별 진흥사업
3.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사진문화 활동 촉진 지원

4. 그 밖에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시장은 사진산업의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